# 초거대 AI 기반 "플랫폼 이용지원" 공모안내서

2024. 5.

##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

## 목 차

I . 공모 개요 ······ 1
1. 추진 배경
2. 사업 내용 2
3. 공모 개요 3
4. 추진체계
5. 추진절차 7
Ⅱ. 선정 방안 8
11. 건경 당인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
1. 지원자격 8
2. 선정방법 및 절차 10
3.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2
Ⅲ. 제안 일반사항
1. 수행관리 및 기타
2. 보안준수 17
IV. 제안서 관련사항 ····· 18
1. 제안서 작성지침
2. 제안서 접수 및 방법 20

## I 공모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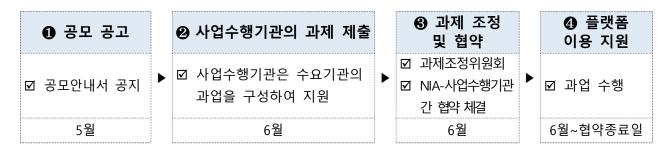
#### 1. 추진 배경

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선도를 위해 **초거대 인공지능을 민간·공공**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**활용지원** 추진

- 정부는 인공지능·데이터 시대의 **새로운 국정운영 모델**인 **디지털플 랫폼정부\* 구현**을 핵심 국정과제(11번)로 추진 중
  - \* (정의)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"디지털 플랫폼" 위에서 국민·기업·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
  - ▶ 국정11 :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
    - (실천과제3)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
  - ▶ 국정77 :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
    - (실천과제1)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(AI) 초일류 국가
  - 이를 통해 국민께는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,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적으로 일하는 정부로 혁신을 목표
- 챗GPT 출시로 촉발된 **초거대 인공지능 열풍**에 힘입어 일상·업무 전반에서 **누구나 쉽게** AI를 활용하는 "AI **일상화**" 본격화
  - 공공 부문의 AI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 정보화 사업 방식과 차별화되는 구조적 전환 및 애자일한 접근법 등이 요구되는 상황으로,
  - · 초거대 AI 플랫폼 활용에 대한 선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수요와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된 초거대 AI 도입 우수사례 발굴 필요
  - 또한 헬스케어, 재난·안전, 복지 등 **사회현안 해결**에 기여할 수 있는 **민간 아이디어**에 대한 초거대 AI 플랫폼 **마중물 지원** 필요

#### 2. 사업 내용

- (목적) 민-관 협업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환으로 행정·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에게 초거대 AI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
- (주요내용) 행정·공공기관과 중소·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, PoC, 플랫폼 이용료 등을 제공하고, 혁신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 이용지원을 추진
  - (플랫폼 이용지원) 행정·공공기관, 중소·벤처기업 등의 수요기관에게 초거대 AI 관련 컨설팅, PoC, 최적화·고도화, 이용료, 활용 교육·세미나 등 제공



#### 3. 공모 개요

- (공모명) 초거대 AI 기반 "플랫폼 이용지원"
- (공모 내용) 초거대 AI 솔루션·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수행기관은 수 요기관에게 초거대 AI 관련 컨설팅, PoC, 최적화·고도화, 이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
- (지원 자격) <sup>①</sup>자체 초거대 AI 솔루션·플랫폼을 보유하며 <sup>②</sup>아래 수행 항
   목에 대해 종합지원 가능한 사업수행기관(단독 또는 컨소시엄\*)
- \* 컨소시엄으로 구성 시 대표 및 참여기업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안
- ※ 수요기관이 행정·공공기관일 경우 국정원의「국가정보보안지침」제41조(클라우드컴퓨팅 보안) 및「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」등 필요한 보안기준 준수
- (**지원 내용**) 사업수행기관은 수요기관에게 수행 항목을 종합지원

#### < 사업수행기관 수행 내용 >

구분	수행 내용	지원금 및 과제수		
① 심층 컨설팅	AI 서비스 기획·신규 개발, 기존 서비스 고도화, 데이터 학습등 도입을 위한 컨설팅 수행			
② PoC	AI 서비스 도입·활용을 위한 데이터등록, 정제, 학습, 모델 배포, 테스트 등 실증(PoC) 지원	• 과제당 9억원 내		
③ 최적화고도화	1차년도('23) PoC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추가학습 및 테스트 등 모델 최적화·고도화 지원	<ul><li>(정부출연금 기준)</li><li>3개 이상</li></ul>		
④ 플랫폼 이용 환경 제공	AI 기술 개발·실증과 서비스 운영, 학습모델 고도화를 위한 초거대 AI 솔루션/플랫폼 이용 환경 제공			

- (공모 방법) 공모에 참여하는 사업수행기관은 중복(컨소시엄 포함)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, 중복 지원 시 해당 컨소시엄 전체를 무효 처리
  - 또한 수요기관은 동일한 과업내용으로 "과기정통부 공고번호 제 2024-0462호(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2024-046호), 2024년 초 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"과 중복지원 불가
  - ※ 중복 참여 및 컨소시엄 중복 결성에 의한 공모 무효에 관해서는 「공모안내서」, 「공고문」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4조(입찰무효) 제1항 4호 및 11호, 제2항을 준용하므로, 동 시행규칙의 입찰무효 사유를 반드시 숙지할 것
  -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,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은 사업 수행기간 중 반드시 전담기관의 별도 승인절차(서면승인)를 거쳐야 함
  - 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제29조(위탁용역) 제3항에 따라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 과업의 일부나 전부를 재위탁 불가
- (**지원 규모**) 정부출연금 총 2,700백만원 내
  - 과제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 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결정
  - ※ 정부출연금 총액 27억원 중 사업수행기관(단독 또는 컨소시엄)당 최대 9억원(30%수준)을 지원하며, 상호출자 비율에 따라 총 사업비(정부출연금+민간부담금)는 달라질 수 있음
  - ※ 정부지원금 규모는 기금 상황에 따라 변동(감액 등)될 수 있음

- (지원 방식) 상호출자(매칭펀드) 방식
  -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(현금+현물)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며, 민간 부담금은 아래 기준을 준수

#### <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>

#### 1. 출연금 등 지원기준

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	그 외의 경우		
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<b>사업비</b> (정부출연금+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)의					
75% 이내	70% 이내	50% 이내	100% 이내		

#### 2.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

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	그 외의 경우		
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<b>민간부담금</b> (현금+현물)의					
10% 이상	13% 이상	15% 이상	필요시 부담		

- ※ 본 사업은 과제 협약 및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(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24-11호) 및 부속 지침을 적용하며, 그 외의 사항은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지침을 적용함. 그 외의 사항은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과제수행 관리
- (**지원 기간**) 협약일로부터 2024.12.15.까지
  - ※「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상의 제37조(자료의 제공요청) 제1항과 부속지침 「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」 제2조 제2항에 의거함
- 수요-공급 연계 운영 방안
  -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수요·공급 연계 지원을 위해 '공공부문 초 거대 AI 도입·활용 가이드라인('24년 4월)', '초거대 AI 기반 플랫 폼 이용지원 사업 관리지침'을 활용하며, 다양한 수요-공급의 정보 공유를 위한 연계(매칭)를 전담기관에서 지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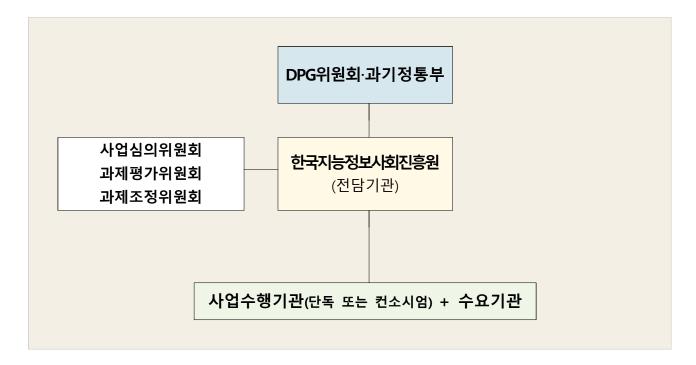
#### ○ 적용규정 및 지침

-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관리규정 전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)
-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)
-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)

-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)
-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)
-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)
-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)
-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)
- ※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의 제·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
-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'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'
-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※ 상기 지침 등은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
-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초거대 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 관리지침

### 4. 추진체계

#### ○ 사업 추진체계



#### ○ 주요 역할

구분	주요 업무
<b>DPG위원회</b> <b>과학기술정보통신부</b> (주무부처)	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
<b>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</b> (전담기관)	o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o 과제 공모 및 참여기관 선정, 협약 체결 o 사업관리, 예산집행 및 정산, 성과 확인 점검, 성과평가
사업심의위원회	o 세부 사업계획 및 공모 안내서 심의
과제평가위원회	o 과제평가 및 지원대상 과제 선정, 결과 평가
과제조정위윈회	o 예산 규모, 과제 내용의 심의 및 조정
사업수행기관	o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제안내용에 따른 사업 추진 o 사업 추진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o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
 수요기관	o 플랫폼 이용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공, 설문·성과조사 참여 등

## 5. 추진절차

구분	내용	비고		
<b>공모 공고</b> ·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공모안내서 확정 · 공모안내서 사전공개 및 과제 공모		전담기관 홈페이지		
<b></b>				
사전 등록	· 자격요건 검토 - 주관기관의 재무 적정성 등 - 자체 보유한 LLM 여부 등	수행기관 (주관기관)		
<b>1</b>				
과제 접수·선정	<ul><li>과제 공모신청서(제안서) 접수</li><li>(사전검토) 선정평가 준비, 사전 검토</li><li>(제안서 평가) 평가위원회를 통한 후보과제 선정</li></ul>	전담기관 - 과제평가위원회		
<b>+</b>				
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	<ul><li>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한 제안내용 등 조정</li><li> 전담기관(NIA)-컨소시엄 간 협약 체결</li><li> 수행 내용에 따른 과업 추진</li></ul>	전담기관-수행기관		
<u> </u>				
중간 점검	• 현황 점검 및 중간보고(진도관리, 예산점검) 등	전담기관		
<u></u>				
사업비 지급  · 이용대금 정산 및 지급  ※ 협약체결 후 80%, 중간보고 후 20% 지급예정 (지급률은 변동될 수 있음)		전담기관		
<u></u>				
<b>과제종료 및 보고</b> · 지원종료 및 수행 결과보고(추진실적 · 초거대 AI 성과보고회 개최		전담기관		
<b>↓</b>		······		
과제 검수	<b>과제 검수</b> · 플랫폼 이용지원 점검 및 평가			
<b>1</b>		7		
사업비 정산	사업비 정산 : 사업비 위탁정산 및 반납·환수(필요시) ※ 전담기관이 지정한 정산위탁기관(회계법인)을 통해 수행			

※ 추진 일정은 과제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$\prod$

## 선정 방안

#### 1. 지원자격

- (지원 자격) <sup>①</sup>자체 초거대 AI 솔루션·플랫폼을 보유하며 <sup>②</sup>수행 항목에 대해 **종합지원 가능**한 사업수행기관(단독 또는 컨소시엄)
  - 사전 등록을 통해 검증 완료된 수행기관만 제안서 제출 가능
  -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과 세부 과업을 담당할 참여기관의 구성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제시
  - 위탁용역(하도급)의 경우 관련 제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심의·조 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을 추 가·변경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
  - ※ 사업 내 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함

#### ○ 수행 업무

- 수요기관에서 제출한 초거대 AI 관련 플랫폼 이용지원 수요 및 요구 사항 분석을 통해 심층 컨설팅, PoC 지원, 최적화·고도화, 플랫폼 이 용 환경 제공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종합지원 수행

#### < 사업수행기관 수행 내용 >

구분	수행 내용	지원금 및 과제수		
① 심층 컨설팅	AI 서비스 기획·신규 개발, 기존 서비스 고도화, 데이터 학습 등 도입을 위한 컨설팅 수행			
② PoC	AI 서비스 도입·활용을 위한 데이터등록, 정제, 학습, 모델 배포, 테스트 등 실증(PoC) 지원	• 과제당 9억원 내		
③ 최적화고도화	1차년도('23) PoC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추가학습 및 테스트 등 모델 최적화·고도화 지원	<ul><li>(정부출연금 기준)</li><li>3개 이상</li></ul>		
④ 플랫폼 이용 환경 제공	AI 기술 개발·실증과 서비스 운영, 학습모델 고도화를 위한 초거대 AI 솔루션/플랫폼 이용 환경 제공			

- ※ 수행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,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※ 수요기관이 행정·공공기관일 경우 국정원의 「국가정보보안지침」 제41조(클라우드컴퓨팅 보안) 및 「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」등 필요한 보안기준 준수
- ※ 선정된 기업은 향후 제안내용 및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해 예산 조정·확정됨
- 사업수행기관은 **다수의 수요기관**\*을 대상으로 과제를 구성하여, 수 행 항목 전부를 종합지원하고 이에 대한 **증빙**\*\*이 가능해야 함
  - \* 수요기관·기업은 제안 과제에 따라 일부 수행 항목만으로 지원 가능
- \*\* 수요기관·기업별 컨설팅 결과보고서, PoC 결과보고서, 최적화·고도화 지원내역서, GPU/토큰 이용료 등
- 사업수행기관 및 과업내용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
  - (수행기관) 컨소시엄을 포함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음
  - (수요기관) 수요기관·기업은 동일한 과업내용으로 "과기정통부 공고 번호 제2024-0462호(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2024-046호), 2024년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"과 중복지원 불가
- (지원 방법) 제안요청 내용과 평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사업수행기관이 디지털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모신청서(별첨. 제안서) 제출
  - ※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(초거대 AI 관련 플랫폼 보유기업)이 공모신청서 제출
- (재위탁 제한) 재위탁(위탁용역(하도급)을 재위탁)은 허용하지 않음
  -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(하도급)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,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(하도급)은 사업 수행 기간 중 반드시 전담기관을 통해 별도의 승인절차(서면승인)를 거쳐야 함
  - ※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제25조(위탁용역) 제3항에 의거하여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 과업의 일부나 전부를 재위탁 불가

#### 2. 선정방법 및 절차

#### □ 사전 등록

- 자격요건 및 구비요건 등 적합성 검토
  - '사전 등록'을 통해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수행기관에 대해 자격요건 및 구비요건 등을 검증
  - 사전 등록을 통해 검증이 완료된 수행기관을 공개하며, **검증완료된** 수행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제안서 제출 가능
- 자격요건 검토 항목
  - 제출서류 적정성, 참여제한 여부, 국세·지방세 체납처분 여부, 채무불이행 여부, 재무건전성(자본전액 잠식) 등을 검토
  - 수행기관(주관기관)으로서 자체 보유한 LLM의 여부
  - ※ 상세 내용은 초거대 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주관기관 '사전 등록' 참고

#### □ 제안서 평가

- (제안서 발표)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발표·시연·질의응답 실시, 제안서 발표는 총괄책임자(PM)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함
  - ※ 총괄(실무)책임자 불참 시, 해당 제안서는 서면 평가로 대체
  - 제안서 발표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해야 하며, 접수 기한 이후 추가 제출할 수 없음
  - ※ 제안서 접수시 발표자료(PDF) 제출, 제안서 발표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
- (평가 적용 규정 및 지침) 평가 관련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「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」에 따름
- (평가위원회 구성)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사업부서를 배제하고 평가부서가 주관하여 위원장 포함 8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
- (평가방법)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(종합점수)를 기반으로 선정

-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·최저점을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
- ※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,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
- ※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우선순위로 인정
- ※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(올해 구축 예정 포함) 활용 또는 연계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
  - 평가결과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, 선정 대상에서 제외
- (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) 주관기관이 보유한 플랫폼의 우수성 및 제공 서비스의 적정성 등과 더불어 수요기관·기업 제안 과제의 충실성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컨소시엄 선정 예정

평가항목 및 기준	배점
1.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	10
o 사업 목표, 추진계획 및 절차, 일정의 적절성	5
o 제안 내용의 구체성,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	5
2.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	10
o 투입인력 수행조직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	5
o 유사 사업(초거대 AI, 정부 과제 운영사업 등) 수행 경험 및 축적된 노하우	5
3.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수행 방안의 적정성	30
o 데이터 전처리, 학습, 테스트 등 초거대 AI 수행 방안의 전문성 및 구체성	7
(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여부 또는 DPG 허브 연계 방안 등)	/
o 데이터 전처리, 테스트 등 ②PoC 지원을 위한 수행 방안의 전문성 및 적정성	8
o 데이터 추가학습, 모니터링 등 ③최적화·고도화를 위한 수행 방안의 전문성 및 적정성	7
o 초거대 인공지능의 ④플랫폼 이용환경 제공을 위한 수행 방안의 전문성 및 적정성	8
4. 플랫폼과 제안 과제의 타당성	25
o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플랫폼의 우수성	15
o 제안 과제의 타당성(지원 필요성 및 혁신성, 양질의 데이터 보유 현황 및 수집계획 등)	10
5.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	20
o 수행 결과의 사회적·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	10
o 성과 목표 및 지표, 수혜 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	10
○ 성과 목표 및 지표, 수혜 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6. 사회적 가치구현, 일자리 창출,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	10 <b>5</b>
6. 사회적 가치구현, 일자리 창출,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	5
6. 사회적 가치구현, 일자리 창출,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o 사회적 약자 기업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	
6. 사회적 가치구현, 일자리 창출,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o 사회적 약자 기업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o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	5
6. 사회적 가치구현, 일자리 창출,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 o 사회적 약자 기업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 o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 o 온실가스 감출,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 o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 계	5
6. 사회적 가치구현, 일자리 창출,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 o 사회적 약자 기업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 o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 o 온실가스 감출,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 o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	<b>5</b>

- □ 과제조정위원회(과제 제안내용 및 사업비 심의·조정)
  -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수행 내용 및 일정, 예산의 적정성 등 검토·심의하여 일부 조정하고, 수행기관 최종 선정
  - 과제조정위원회 조정·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체결을 진행하고, 심의 결과를 거부하는 경우 협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

#### 3.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

- (**협약체결**) 평가 후 제출 및 승인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전 다기관(NIA)과 사업수행기관 간 협약체결
  - ※ 협약체결 이후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착수계와 함께 사업담당자에게 제출(양식 별도 제공)
- (사업비 지급) 사업비(정부출연금)는 과제별 지원금 규모에 따라,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예정
  - ※ 협약체결 후 80%, 중간보고 후 20% 지급 예정(지급률은 변동될 수 있음)
- 사업수행기관과 수요기관·기업 간 매출, 유지보수, 저작권 등 제반사 항은 민간 자율 계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전담기관은 개별사 안에 대해 조정 및 개입하지 않음

## $\coprod$

## 제안 일반사항

1. 수행관리 및 기타

#### □ 수행관리

본 과제의 협약 및 수행은 「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-11호)」 및 부속지침을 적용하며, 그 외의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\*과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과제수행 관리

\*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,「사업관리기본 운영규칙」,「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」등

#### □ 수행내역 관리

- 일상적인 과제수행 보고는 수시 및 월 1회 정기 보고로 진행하며, 착수, 중간, 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의 수행 내역 점검
  - 사업추진 관련 주·월간 보고(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) 개최 시 영상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,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NIA(사업담당부서) 소 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
  - ※ 필요시 구체적 회의 방식과 장소는 상호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
- 수행 중 필요시 「실무전담반」의 구성,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
- 수행 중 전담기관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「추진협의회」등의 체계 및 구성·운영을 요청할 수 있음
- 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,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며 현장 점검및 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
-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,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은 사업 수행기 간 중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(서면승인)를 거쳐야 함

- ※ 위탁용역의 경우,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여야 하며,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탁용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(위탁용역계획, 수행 기간, 소요 예산 등 관련 내용 포함)
-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결과평가를 수행하여야 함

#### □ 수행변경 관리

- 추진기간 중 사업 목표, 내용 및 범위, 예산, 참여인력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, 즉시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전 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
  - ※ 수행기관 변경 등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의 과제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협약변경은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가능함
- 추진 기간 중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, 전 담기관에 변경 내역을 즉시 통보해야 함

#### □ 사업비 관리

- 본 사업은 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및「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적용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
  - ※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「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및 부속 지침의 제·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
- 사업비 집행 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담기관에 통보
- 당해연도 사업 기간 종료 후 성과조사를 시행
- 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사업과 무관한 경우, 증빙서류가 없거나 위 조된 경우 등에는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되지 않음
  - ※「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」제7조(사업비 불인정기준)를 기준으로 함
- 사업종료 후 사업수행계획서, 예산산출 내역 등에 근거하여 사업비 정산
  - 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에게 정산업무를 위탁하며, 사업수행 기관은 사업비 편성 시「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해당 비용(정산위탁수수료)에 대한 내역을 포함해야 함

#### □ 수행 결과물

- 사업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유·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에 귀속되나, 해당 사업의 특성상 수요기관·기업과 전담기관 (NIA)이 사전협의 등을 통해 소유권 등을 달리 조정할 수 있음
  - 사업 기간 후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전담기관(NIA)으로 양도할 수 있음
- 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유·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「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」을 따름
  - 성과활용기간\* 내에 사업수행기관이 유형적 결과물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
  - \* 성과활용기간 :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 간
  - 성과활용기간 동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 수행기관은 별도 서식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
#### □ 제재 조치

○ 사업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, 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'미흡'이하인 경우에는 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에 의하여 발주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차년도 동일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을 받을수 있음

평가점수	90점이상	80점~89점	70점~79점	60점~69점	60점 미만
평가결과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
#### □ 기타사항

- 결과물의 귀속 및 자산관리, 콘텐츠 관리, 기술료 징수 등의 사항은 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과 「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」 준용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
  - ※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「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및 부속 지침의 제·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
-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 이행각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함
- 제안기관은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
- 그 외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행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, 전시,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※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구축비 등은 운영비 내 홍보비로 편성·활용 가능
- 과제추진 시 천재지변, 전염병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등)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,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- 향후 DPG 허브의 연계·공유를 위한 활동(플랫폼 이용 환경 연계 제공, 성과 점검, 경진 대회, 산출물 등록 등)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  - ※ DPG 허브의 테스트베드(https://dpgtestbed.kr/)와 '플랫폼 이용 환경'을 API, 링크(SSO) 등의 방식으로 연계·지원 (세부사항은 별도협의)

#### 2. 보안준수

- 본 사업계획서 및 공모안내서(제안요청서) 이외에 한국지능정보사 회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, 제안서와 관련하여 한국지능정 보사회진흥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,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
-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함
-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

## IV 제안서 관련 사항

#### 1. 제안서 작성지침

#### □ 제안서 작성요령

-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(국문)으로 작성되어야 하며,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
- 제안서의 구성은 별첨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
-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함
-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, "~를 제공할 수도 있다", "~이 가능하다", "~을 고려하고 있다"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
-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,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
  - 특히,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
-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,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 목에 "해당없음"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

-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,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, 협약체결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
- 협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지 못할 경우,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지게 됨

#### ○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

- 분임 안전보건책임자는 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 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
- 협약체결시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

#### □ 제안서 작성규격

- 제안서는 A4 세로형태, 제안 발표자료는 A4 가로형태의 자유 양식으로, 발표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
  - 총 분량은 표지, 간지,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, 별첨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파일 내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하여야 함
  - PDF 파일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, 페이지 번호는 PDF 페이지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

#### □ 제안서 효력

-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.보 완.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 이 있음. 단,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
- 제안요청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
-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

#### <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>
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, 공정한 거래, 상생문화를 정착·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.

- (1)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·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.
- (2)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, 사업기간 연장,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,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3) 사업의 특성,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'간접비'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4)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5)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, 민원해결,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6) 천재지변,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7) 사업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·자료·물건 등의 소유·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8)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,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9)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, 분쟁조정신청,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 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0) 계약해제·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, 국가 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,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II)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·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2)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,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,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,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

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- 또는,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,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,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,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3) 사업수행 시 적정 사업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.
- (14)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15)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수행을 권장합니다.
- (16)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,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,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.

#### <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>

- ›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계약서 교부의무, ▲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, ▲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
- ›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부당한 거래조건(특약) 설정, ▲하도급대금 부당 결정·감액, ▲부당한 위탁취소, ▲부당 반품, ▲기술자료 부당 요구, ▲기술유용, ▲경영간섭, ▲보복행위 등
- (17)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·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,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(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)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 다.
- (18)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·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(레드휘슬) 안내 >

- 1. 신고대상 및 내용
  -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
  -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 -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,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
- 2. 신고요령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(감사실장), 신고사이트 방문(www.redwhistle.org)
- 3. 신고 시 유의사항 :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, 제보자의 인적사항(성명, 연락처 등)이 허위이거나,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
  - ※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,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
- (19)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, 거래,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. 특히 제안서 접수, 제안 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하고,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. 또한 사업관리 전

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.

※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『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』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